

## 전자거래 분쟁해결기관 업무협약서

한국콘텐츠진흥원과 서울특별시, 한국소비자연맹(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), 한국소비자원,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“각 기관” 이라 한다)은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및 전자거래 시장의 건전화를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전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각 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협력분야)**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며,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내용과 조건 등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한다.

1.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및 소비자 지향적 전자거래 시장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공동 정책연구 등 업무협력
2. 전자거래 소비자권의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상호 지원·교류
3.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상담·피해구제·분쟁조정 서비스의 상호지원
4. 기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상호 합의하는 사항

**제3조(운영위원회)** 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.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 각 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. 단, 법령에 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적법한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5조(비용부담)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6조(협의조정) 본 협약의 해석에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.

제7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. 단, 협약 종료일 전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협력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제8조(효력) 본 협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4조(비밀유지), 제7조(협약기간), 제8조(효력)을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

제9조(기타) 각 기관은 서명날인 후 본 협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하고, 본 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한다.

2019년 9월 19일

 한국콘텐츠진흥원  
KOREA CREATIVE CONTENT AGENCY

원장 김 영 준



 서울특별시  
SEOUL METROPOLITAN GOVERNMENT

시장 박 원 순



 한국소비자연맹  
(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)  
KOREA CONSUMER AGENCY

회장 강 정 화



 한국소비자원  
Korea Consumer Agency

원장 이 희 숙



 한국인터넷진흥원  
KOREA INTERNET & SECURITY AGENCY

원장 김 석 환

